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8-25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그 취지에 맞게 규정하고, 법령 중복·재기재 사항을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 재기재·위배, 유명무실한 조항 삭제(구 2조~제5조, 제7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제17조, 제19조)

- 정의,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 센터의 사업,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자원봉사단체협의회, 학교·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경력 및 실적 인정 등, 사기진작, 실비지급

나.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3조)

다. 자원봉사 요청 및 배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라. 보험가입 규정을 법령 취지에 맞게 수정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제14조

나. 예산조치: '18년도 예산 600만원

다.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18. 1. 17.~2. 6.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6) 도내 개정현황(센터 등록 및 보험지원 정비관련)

○ 개정완료(2): 통영, 함안

○ 입법예고(1): 진주

(7)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 반영함.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사회의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여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지역사회의 자원봉사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거창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3조(센터장의 선임 방법 및 절차) ①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선임한다.

1.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센터: 군수가 선임
 2. 그 밖의 경우: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이 선임하여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
- ② 군수는 센터장을 직접 선임할 경우 면접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면접은 5명 이내의 심사위원이 하되, 심사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 ③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임기 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제4조(센터의 지원) 군수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자원봉사 요청 및 배치) ① 자원봉사자의 도움이 필요한 자원봉사 수요자는 센터와 자원봉사단체에 자원봉사자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의 요청을 받은 센터 및 자원봉사단체는 인적·물적 자원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교육·훈련을 받은 자원봉사자의 전공·소질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선발·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자원봉사단체 지원) 군수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 또는 자원봉사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보험가입) ① 군수는 법 제14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센터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가입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장은 센터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군수에게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제1호에 따라 보험 및 공제 가입을 신청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제6조(자원봉사단체 지원) 군수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 또는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지원 예산은 6백만원으로 연 5천만원 이하에 해당

4. 작 성 자

복지정책과장 정상준